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본 연합회 •

미국

연방법무부, Exelon과 PSEG에 대해 160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을 위한 매각 요청

연방법무부는 Exelon Corporation(이하 Exelon)과 Public Service Enterprise Group Incorporated(이하 PSEG)에 대해 160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6개의 발전소(펜실바니아 주 소재 2개, 뉴저지주 소재 4개)를 매각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법무부는 원래 신고된 기업결합은 도매가격을 인상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중부 대서양 지역의 수백만 소비자들에게 가격인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경쟁상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동의명령도 제출했다.

독점금지국장은 “전기는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매각은 이러한 중대한 상품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의 이익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가장 큰 전력회사를 탄생시키고 중부 대서양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들간의 결합이 된다. 또한 이 회사들은 동부 펜실바니아, 뉴저지, 컬럼비아, 매릴랜드 및 버지니아 지역에 발전용량의 거의 절반을 소유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들간의 결합은 결합기업이 도매 전기 가격을 인상시킬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연방법무부는 보았다.

연방법무부가 제출한 동의명령의 내용에 의하면, 결합기업은 반드시 5,600 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능력을 가진 6개의 발전시설을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고 한다. 이 매각되어야 할 시설들은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Cromby 발전소와 Eddystone 발전소이며, 뉴저지에 있는 Hudson

발전소, Linden 발전소, Mercer 발전소 및 Sewaren 발전소이다. 또한 연방법무부는 향후 중부 대서양 지역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지배 또는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당국의 승인을 먼저 얻을 것을 요구했다.

Exelon과 PSEG는 모두 PJM Interconnection LLC(이하 PJM)라는 지역 유통 조직에 가입하고 있다. PJM은 뉴저지, 펜실바니아, 델라웨어, 매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및 일리노이 지역에서 전기 도매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Exelon은 펜실바니아에서 설립되었으며 그 본사는 시카고 있다. 작년 수익은 153만 달러이다. PSEG는 뉴저지에서 설립되었으며 그 본사는 뉴욕에 있다. 작년 수익은 124만 달러이다.

2006. 6. 22. 연방법무부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전자문서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 도입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Hart-Scott-Rodino법(이하 HSR 법)에 의해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시간을 절약하는 동시에, 문서를 배달하거나 복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결합 당사자들은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두 곳에 사전신고 양식과 관련 서류들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결합 관련 서류들은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독점금지국과 연방거래위원회의 담당자들은 그 전자적 처리에 있어서 매 단계마다 제출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HSR법과 HSR규칙들에서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당사회사들은 기업결합을 하기 전에 신고서 및 보고서를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요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HSR법은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이 기업결합을 하기 전에, 경쟁당국에 추가자료 제출을 더 이상 요구

하지 않은 때로부터 15일 내지 30일의 대기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경쟁당국은 신고된 기업결합에 대해 조사할 기회를 갖게 된다.

2006. 6. 20. 연방법무부

E U

경쟁정책에 관한 2005 연차보고서 발간

2005년도 EU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EU위원회가 채택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 결정에 관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경쟁위원인 Neelie Kroes는 "EU위원회가 추구하는 경쟁정책은 경쟁적인 유럽시장 형성과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다. 이 보고서는 주요한 의미를 갖는 최근의 결정들과 정책들을 담고 있으며,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및 국가보조에 관한 EU 규범의 준수 확보 및 관련 논쟁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경쟁제한적 사업활동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EU 규범 분야에서는, 2005년도 정책 개발은 이러한 EU 규범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녹서 및 배타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토의서 발간을 포함한다. 진입장벽의 정도와 가능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가스, 전기 및

금융 서비스 등 주요 산업부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카르텔을 금지하기 위해 총 6억 8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시장에서 AstraZeneca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상표미등록 약품(generic drugs) 시장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지위를 남용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통제에 관한 EU 규범들과 관련해서는, 과거 EU위원회가 승인한 구제방법들에 대한 분석인 기업결합 구제에 관한 주요한 연구결과가 2005년에 발간되었다. 위원회에 신고된 기업결합 건수는 313건 까지 다시 증가되었다. 위원회는 심층 조사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5개의 심결을 했다.

2006. 6. 20. EU위원회

EU위원회, 항공사 연합체인 SkyTeam에 이의제기

위원회는 SkyTeam의 회원사인 항공사들에 대해 이의 서한을 보냈다. 위원회는 회원사들이 대체로 경쟁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몇몇 항로에서 회원사들간의 협력행위로 인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EU조약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활동의 제한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의 목적은 SkyTeam 회원사

들의 경쟁제한이 이들간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이익을 능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SkyTeam은 다양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세계적인 항공사간 연합체이다. 이번 이의 서한은 Aeromexico, Air France, Alitalia, Continental Airlines(미국), CSA(체코), Delta Airlines(미국), KLM(네덜란드), Korean Air Lines와 Northwest(미국) 등 모든 회원사에 전달됐다.

SkyTeam 협정은 전 세계 수천 개의 도시들 간에 항로를 커버하고 있다. 이들 시장의 대부분에서는 회원사들 간의 협력행위가 경쟁상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yTeam 회원사들 간의 협력으로 노선간 연결의 용이, 비용 절감, 회원사간 시너지효과 증대 등 잠재적 경제 이익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시장에서 SkyTeam 회원사들 간의 협정은 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이익에 반하여 사실상 경쟁에 부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경쟁상 문제가 있는 노선들은 주로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2006. 6. 19. EU위원회

유럽위원회, 7개사에 의한 표백제 화학제품 카르텔에 3억 8,812만 유로의 제재금 부과

유럽위원회는 9개사가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정하는 EC조약 제81조에 위반하여 과산화수소(이하 : HP) 및 과붕산염(이하 : PBS) 시장에서 카르텔에 참가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7개사(Akzo Nobel사, Edison사, FMC/Foret사, Kemira사, Snia사, Solvay사 및 Total/Elf Aquitaine/Arkema사)에 대해 3억 8,812만 유로의 제재금을 과하였다. 이들 사업자 가운데 Arkema사(전 Atofina사), Solvay사 및 Edissons사는 상습적인 위반자였기 때문에 제재금을 증액하였다. Degussa사는 또 다시 위반을 범했지만 카르텔의 정보를 제공하여 전액면제를 받지 않았다면 제재금이 부과되는 것 이었다. L' Air Liquide(및 그 자회사인 Chemoxal사)는 배제명령 대상이나 1998년에 사업으로부터 철수했기 때문에 제재금을 과할 EU위원회의 권리는 실효한다. 9개사는 유럽 경제지역(이하 : EEA)에서 HP 및 PBS에 관해 1994년부터 2000년 사이에 상업상 중요한 비밀정보를 교환하고, 생산량 제한, 시장과 고객의 할당 및 HP와 PBS의 가격결정과 감시를 하였다.

Neelie Kroes 경쟁담당위원은 「카르텔은 단일시장에 있어서 소비자

의 이익을 박탈하는 용납하기 어려운 협조행위이다. 이러한 고액의 제재금은 특정의 사업자는 상습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사와 주주도 마찬가지로 왜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방치되어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HP는 펌프와 종이제조업자가 직물의 표백, 소독에 사용하거나 하수처리와 같은 환경 설비에 사용되는 산화제이다. HP는 PBS를 포함한 과산염과 같은 과산화물의 고가공도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다. PBS는 주로 합성세제와 기루세제에 사용되는 활성물질이다. HP와 PBS에 관련한 카르텔로 1984년에 유럽위원회로부터 Degussa사, Solvay사, Atochem사(현 Arkeme사) 및 L' Air Liquide사는 배제명령을 받았다. 2000년 EEA 전체에서 HP와 PBS의 시장규모는 약 4억 7,000만 유로로 평가되었다.

2002년 12월에 Degussa사는 제재금의 면책을 신청하였다. 그 후 2003년 3월에 유럽위원회는 Atofina 사(현 Arkeme사)와 Solvay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몇 건의 제재금 감액을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명백한 증거

당해 위반행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조업자간의 분배 모델』 회의라고 언급된 1995년 초 경쟁사업자들 간의 모임의 기록으로부터 볼 수 있다. 1997년 11월 26일 브뤼셀 레스

토랑에서의 회합에서 참가자는 1997년 8월 고위층 회합에서 합의한 가격상승의 실행과 평가에 대해서 의논하고, 추후의 가격상승에 대해서 계획하였다.

1998년초 행해진 또 다른 고위층 회의의 기록은 참가자가 1997년 10월 및 11월의 효과적인 가격상승의 실현을 환영하였고, 그들 전원이 이전의 회의 개최시부터 당해 회의 개최시까지 정해진 실시요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제재금

밝혀진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였다. 제재금을 과함에 있어서 유럽위원회는 EEA의 규모, 카르텔이 행해진 기간, 참가한 사업자의 사업규모를 고려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위반행위가 카르텔의 재범사업자라는 점에 의해 제재금을 50% 증액하였다.

몇몇 기업은 위반을 폭로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 협력에 대해 유럽위원회의 leniency 고시에 따라 감면되었다. Degussa사는 1억 2,993만 800유로가 과해지는 상황에서 전액면제가 인정되었다. 한편, Akzo/EKA사, Total/Elf사, Aquitaine Arkema사 및 Solvay사는 정보제공을 한 것으로 감면되었다. 제재금이 감면되기 위해서는 제공된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타이밍과도 관계가 있다. 본 건에서는 각 사로부터 몇 일 또는 몇 시간 내에 정보제공이 행해졌다.

Air Liquide/Chemoxal사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시점에서 제재금을 과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을 경과(1998년에 HP 시장으로부터 철수)했으나, 유럽위원회는 Air Liquide사가 시장에서 활동한 시점에 있어 동 사에게는 당해 시장에서

행해진 카르텔에 참가했다고 인정하였다. 1998년까지 Air Liquide사가 위반행위에 참가한 점 및 역할은 다른 참가자와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점을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였다. 최종적으로 동 결정은 손해를 입은 자가 모든 카르텔 참가자에 대해 회원국 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손해배상소송

본 건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과 기업은 누구라도 회원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행위가 행해진 점 및 그것이 위법이라는 점의 증거로서 공표된 결정문의 요소를 제출할 수 있다. 손해의 재정(裁定)은 유럽위원회가 관계기업에 제재금을 과했더라도 그 부분을 감액함이 없이 행해질 것이다.

2006. 5. 3. 유럽위원회 발표문

유럽위원회가 과한 제재금 및 감액률

| 기업명 | 감액률(유로) | 제재금(유로) |
|--|---------|-----------------|
| 1 Degussa | 100% | 0 |
| 2 Solvay | 10% | 1억 6,706만 |
| 3 Total/Aquitaine/Arkema※ | 30% | 7,866만 3,000 |
| 4 Akzo Nobel/Akzo Nobel Chemicals Holding /EKA Chemicals AB※ | 40% | 2,520만 |
| 5 FMC Corporation/FMC Foret※ | – | 2,500만 |
| 6 Kemira | – | 3,300만 |
| 7 Edison/ex-Ausimont(now Solvay Solexis)※ | – | 5,812만 5,000 |
| 8 Snia/Caffaro※ | – | 107만 8,000 |
| 합 계 | | 3억 8,812만 8,000 |

기업명 뒤에 (※)로 표시된 법인은 과해진 제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공동 또는 개별 책임을 지는 법인

유럽위원회, Tomra 그룹의 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 2,400만 유로의 제재금 과함

유럽위원회는 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규제한 EC조약 제82조 위반으로 노르웨이 Tomra 그룹에 대해 2,400만 유로의 제재금을 과하였다. 유럽위원회는 Tomra사가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내 소매점 등에 설치된 사용한 음료 용기를 회수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기계의 공급시장에 있어서 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수량의무와 할인을 포함하는 로얄티라는 배타적 협정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Tomra사의 행위는 다른 제조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 또는 적어도 자연시킨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것은 심각한 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의 결여는 당해 상품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은 제품이 제공되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Neelie Kroes 경쟁정책담당위원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경쟁을 저해하고 경쟁사업자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는 지배적 기업에 대해서는 묵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기술혁신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지배적 기업은 실존하는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전략 중 하나로서 리베이트와 할인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Tomra사는 1998년부터 2002년 까지 5개국의 시장에서 배타적 전략을 이행함으로써 EC경쟁법에 위반했다.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위법으로 밝혀진 행위는 ① Tomra사에 독점적인 기계공급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② 개별의 수치목표 또는 소급적인 리베이트 제도를 과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구입 최저수량은 통상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계의 전량 또는 거의 전량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Tomra사가 실시한 이러한 행위 모두는 제한을 의도한 것이며, 효과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다른 기계공급자의 능력에 대해 제한 또는 심각한 방해가 되었다.

유럽위원회의 조사는 독일의 기계 공급업자가 유럽위원회에 대해 Tomra사가 여려 대규모소매점의 협정을 통해서 지배적지위를 남용하고, 특히 독일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을 요구해 온 소송이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유럽위원회는 각국 당국협력의 원조를 받아 Tomra 그룹 각 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현장검사에 의해 Tomra사가 실존하는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는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는 증거를 얻었다.

당해 위법행위에 의해 Tomra사는 그 지배적지위를 확대 또는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 지배적지위의 남용은 의도적이며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을 의도하여 행해졌다.

유럽위원회는 Tomra사의 위반행위는 이미 유럽위원회 및 유럽법원에 의해 유죄로 판명된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재금을 설정할 때 유럽위원회는 위반의 중대성 및 그 기간, 즉 5년간을 고려했다. 아래의 Tomra 그룹 자회사에 총액 2,400만 유로가 엄격히

과해졌다.

- Tomra Systems ASA
- Tomra Europe AS
- Tomra Systems B.V.
- Tomra Systems GmbH
- Tomra Butikkssystemer AS
- Tomra Systems AB
- Tomra Leergutsysteme GmbH

2006. 3. 29. 유럽위원회 발표문

독 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연방카르텔청의 E.ON Ruhrgas에 대한 결정을 확인

Ulf Böge 연방카르텔청장은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이 “가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방카르텔청은 가스배급업자들과의 가스공급계약을 장기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유럽 경쟁법과 독일 경쟁법을 위반할 정도로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을 지난 1월에 E.ON에 통보한 바 있다. 카르텔청은 E.ON의 그러한 행위를 금지했다. 이 금지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에 E.ON은 이러한 즉각적인 금지 효과 및 이 사건에 대한 연방카르텔청의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을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연방카르텔청이 즉시 금지 효력이 발생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결정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우리 카르텔청이 시당국과 가스배급업자간의 장기간 배타적 거래계약에 대해 직무상 행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하나의 공급자와의 장기간의 배타적 구매계약은 가스 배급업자들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배제한다. 그는 또한 “장기 계약의 무효화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모든 시당국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방카르텔청은 이처럼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종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는 각 주의 경쟁당국들이 이들을 주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06. 6. 20.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복권회사에 대해 경고

연방카르텔청은 지역 복권회사들 및 Deutscher Lotto-und Toto-block(이하 DTLB)에 대해 독일 경쟁법 및 EU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경

고장을 발송했다. 이들은 복권회사들 간의 합의로서 복권과 운동경기에 대한 베팅 서비스를 자신들이 인정한 지역에서만 각각 제공하는 이른바 지역주의 원칙 등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했다.

이미 1999년부터 독일 연방대법원은 복권회사들이 복권시장에 진입하려는 복권대리점들을 배제하는 것을 금지해왔고, 연방카르텔청의 이러한 금지 결정을 대법원은 인용했었다. 따라서 복권대리점들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들은 복권 게임에서 독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복권 대리점들은 단순히 고객과 복권회사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만을 했기 때문이다. 복권대리점 자신이 고객들과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다. 복권대리점은 우선 인터넷, 전화 및 메일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는 활동이 제한됐다. 지금 그들은 또한 슈퍼마켓이나 주유소 매점과 같은 소매점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연방 카르텔청의 현재 관점에서는 복권대리점들이 소매점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복권대리점의 사업활동을 심각할 정도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권회사가 해당 주에서 자신이 인정한 대리점들에 대해서만 복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이른바 “지역주의 원칙”으로서 경쟁법

에 위반되는 것이다. 연방카르텔청은 이러한 지역할당은 경쟁법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복권회사들간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2006. 5. 30.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조미료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연방카르텔청은 지난 2002년 7월에 내려진 금지명령을 위반한 TEUTO Gewürzvertrieb GmbH (이하 TEUTO)에 대해 25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TEUTO는 Fuchs 그룹의 계열사이다.

지난 2002년 연방카르텔청은 Fuchs 그룹에 대해 중소규모의 조미료 제조사인 Hartkorn의 사업활동을 불공정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바 있다. 이 불공정행위는 경쟁사를 시스템적으로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으로서, Fuchs 그룹과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소매업자들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광고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을 구사했다.

Fuchs 그룹은 미국회사인 McCormick사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조미료 제조업자이며, 독일과 유럽에서는 확고한 시장 선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Fuchs, Ostmann, Uebena 및 Wagner 등의 브랜드로 건조 조미료와 가정용 허브 제품들을 TEUTO라는 유통사

를 통해 독일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Fuchs는 독일에서 시장 지배적지위에 있다.

연방카르텔청의 조사에 의하면, 2002년 7월 금지명령이 있은 이후에 TEUTO의 영업을 통해 적어도 5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TEUTO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더 이상 소매업자들에게 서면으로 상대방을 구속하지는 않았으나, 공급계약 과정에서 구두 또는 사실상 강제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구속했다. Hartkorn과 거래를 하지 않는 인센티브로서, 소매업자들은 광고비에 대한 보조와 조미료가 진열된 상품진열용 선반을 받았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그 당시 마케팅 책임을 지고 있던 TEUTO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연방카르텔청은 지금 이러한 감독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TEUTO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Böge 연방카르텔청장은 “우월적 사업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소규모의 경쟁자를 배제시키려는 행위는 경쟁법상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경쟁당국이 내린 금지명령은 계속 위반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6. 5. 9. 연방카르텔청

프랑스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은 점

경쟁평의회, 국내 2개의 카르텔에 대해 leniency 제도를 처음 적용

경쟁평의회는 목제(木製) 도어 제조업자 9개사가 가격협정을 체결한 것을 위법하다고 인정하였다. 제재금은 국내법과 EU경쟁법에 비추어 합계 500만 유로에 달한다.

France Portes사는 leniency 절차를 이용하였고, 경쟁평의회는 새로운 leniency 규정의 첫 적용으로서 동사에 대해 제재금을 면책하였다.

카르텔에서 France Portes사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125만 유로의 제재금이 부과되는 상황이었다.

동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해 전액 면책을 받게 되었다.

- France Portes사가 당국에 대해 최초로 유력한 증거를 제공하고, 2개 카르텔(플래시 도어 및 랙카 도장제 도어 쌍방 카르텔)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공헌한 것, 카르텔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
- 심사과정에서 일관해서 당국에 대해 완전한 협력의 자세를 보여준 점
- 다른 카르텔 구성원에 압력을 가지 않은 점
- 심사개시시에는 카르텔로부터 이탈하고, 카르텔 구성원에 대해 카르텔

leniency 제도의 존재는 카르텔을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한다.

leniency는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며, 경쟁평의회가 인식할 수 없는, 스스로가 참가한 카르텔의 정보제공을 담보로 하여 절차종료 시에는 제재금의 감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수단은 경쟁평의회에 법적인 무기(배제조치명령, 제재금, 화해, 협약)를 증대시킴과 더불어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해 절차는 카르텔 구성원에 대해 감면을 받기 위해 언제라도 카르텔로부터 이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강력한 불안정요인을 가지기 때문에 카르텔의 탐지, 특히 가장 악질인 수평카르텔의 탐지에 관해 놀랄만한 개선이 도모된다.

당해 제도의 도입 이후 프랑스의 leniency 제도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 경쟁평의회에서는 이미 17건의 감면신청에 대해 고려중이다. 감면신청의 80%는 유럽경쟁네트워크(ECN)가 설립한 2004년 5월 1일 이후에 제출된 것이다.

처리절차의 흐름

본 건에서 France Portes사는 2002년 5월 leniency 신청을 하고, 프랑스 국내에서 행해진 목제 도어 제조업자간의 카르텔을 고발하였다.

France Portes사는 신고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카르텔을 입증할 다수의 증거를 당국에 제시함과 아울러 카르텔이 행해진 경위와 실시상황에 관한 중요한 국면을 기록한 메모를 작성하였다. 더욱이 France Portes사는 후일 락카 도장제 도어 카르텔에 대해서도 신고하였다.

경쟁평의회는 2002년 7월 23일에 발표한 의견서에서, France Portes사에 조건부 leniency를 부여함과 동시에 직권상 절차를 개시하였다. 그 후 경쟁평의회는 동 절차의 일환으로서 즉각 DGCRF(경쟁평의회부정행위방지총국)에 대해 후일 조사의 원인이 되는 검사의 실시를 요청하였다.

분명하게 된 두 건의 카르텔의 존재
당국이 심사과정에서 France Portes사로부터 파악한 정보에 부수(付隨)한 신고에 의해 당해 업계에서 사업자에 따라 엄격한 시장환경하에 공통의 최저판매가격을 설정했다는 두 가지 카르텔의 입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첫 번째 카르텔은 「C5」 또는 「club of the five」라 일컬어진 목제 도어 카르텔이며, 2001년 말까지 실시되었다. 카르텔 참가사업자는 France Portes사, Ekem사, Magri사, Fonmarty사, JH Industries사, Righini, Malerba사 및 Blocfer사이다. 이러한 경쟁사업자는 보르도에서 개최된 전국목공업자조합(SNFMI)의

회합 후에 집결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는 2000년까지 행해진 락카 도장제 도어에 관한 카르텔이다. 카르텔 참가구성원은 락카 도장제 도어 주요 제조업자인 Frances Portes사, Berkvens-Svedex사, Polydex사이다. 회합은 1년에 1회 파리에서 행해졌다.

- Magri : 25만 유로
- Blocfer : 30만 유로
- Berkvens-Svedex : 4만 유로
- Polynorm의 계승회사 Polydex : 15만 유로

2006. 4. 11. 프랑스경쟁평의회 발표문

일 본

공취위, 주식회사 루시안에 대해 권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주식회사 루시안(이하 루시안)에 대해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제4조제1항3호(하청대금의 감액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권고조치했다.

루시안은 레이스 제품 등 섬유 제품의 제조를 하청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자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하청사업자에 대해서 하청대금의 액수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합의한 하청사업자에 대해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하청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 중 일정율을 곱해 얻은 액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의 액수를 줄이고 있었다. 하청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감경하여 지불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루시

약점행위와 부과된 제재금

경쟁당국은 카르텔을 가장 악질적인 행위형태로 보고, OECD에서는 이것을 하드코어 카르텔이라 부른다.

이 특수한 사례에서는 경쟁해야 하는 사업자 사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최저판매가격이 결정되었다. 가격결정은 당해 시장에 외국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프랑스 시장을 분할하는 영향도 가져왔다.

그렇지만 경쟁평의회는 제재금 산정시에 2개의 카르텔에 있어서 사업자가 반드시 최저판매가격을 적용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시장에서 경쟁감煞은 제한된 것이었다고 짐작하였다.

경쟁평의회는 아래의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제재금을 과하였다.

- Righini : 43만 유로
- Malerba : 140만 유로
- JH Industries : 160만 유로
- Ekem : 30만 유로
- Fonmarty : 70만 유로

안에 대해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사이에 하청대금의 액수 중 감경한 총액 1,710만 2,860엔을 하청사업자 74명에게 신속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감액행위가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 및 향후 하청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하청대금을 감경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이사회에서 확인하는 것과 이러한 사실을 거래처 하청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사내 체제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그 내용을 자사의 임원 등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했다.

2006. 6. 30. 공정취인위원회

『가정용 전기제품의 유통에 있어서의 부당염가판매, 차별대가 등 대응』 공표

가정용 전기제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최근 소매시장에의 가전 양판점의 성장이 눈부시고, 유명 기업의 가전 양판점에의 판매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에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가전 양판점간 격렬한 저가격 경쟁에 의해 지역 가전 소매점의 사업활동에 주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공정취인위원회는 올해 5월 16일 「가정용 전기제품의 유통에 있어서의 부당염가판매, 차별대가 등에의 대응에 대해」(이

하 가전 가이드라인)의 원안을 공표 하여, 각 방면에서 의견을 모집했다. 의견 모집 결과, 15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번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한 후, 가전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하기로 했다.

공정취인위원회는 가전 가이드라인을 사업자 등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상담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적절하고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용 전기제품의 유명기업, 소매업자 등 관계사업자에게는 가전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다.

2006. 6. 29. 공정취인위원회

2005년도 독점금지법 위반사건 처리상황 발표

공정취인위원회는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는 사건심사를 실시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가격카르텔·입찰담합 행위, IT·공익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신규진입 저해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나 부당염가판매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 특히, 중점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IT·공익사업 분야

나 지역재산권 분야에 있어서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테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사건처리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에 노력해 오고 있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독점금지법을 활용해 국제카르텔, 발주자측의 관여가 의심되는 입찰담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05년에 있어서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의 처리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사건의 개요

- 2005년도에 있어서 19건, 총 492 사업자에 대해 법적 조치. 이 중 2 건은 개정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배제조치명령
- 구체적으로는 입찰담합 13건, 가격 카르텔 4건, 불공정한 거래방법 2 건과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실효성 있는 다양한 사건처리
- 개정 독점금지법에 의해 도입된 과징금 감면과 관련된 보고 등의 건 수는 26건
- 신속한 법운용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한 전 사건의 평균 심사 기간은 약 8개월로, 개정 독점금지법 시행 후 사전 절차를 거치고 배제 조치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동시에 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
- 국토교통성이 발주한 철교 공사와

- 관련된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서 26사 8 사업자를, 일본도로공단이 발주한 철교 공사와 관련된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서 6사 7 사업자를 각각 검찰총장에게 고발
- 일본도로공단이 발주한 철교 공사와 관련된 입찰 담합 사건에서 이 공단 총재에 대해서 관제 담합방지 법에 근거하여 개선 조치를 요구
- 2005년도에 있었던 과징금에 대해서는, 총 399 사업자에 대해서 188억 7014만 엔의 납부 명령을 확정(과거 최고 금액).

2. 주요 사건

- (1) 입찰 담합·가격 카르텔에의 엄정한 대처
 - 국토교통성 관동지방 정비국, 동북 지방 정비국 및 호쿠리쿠 지방 정비국 및 일본 도로 공단이 발주한 철교 공사와 관련된 입찰 담합 사건(2005년 9월 29 권고, 같은 해 11월 18 권고심결(40사) 심판 개시 결정(5사(중 1사에 대해서는 2006년 5월 15일 동의심결)))
 - 일본도로공단이 발주한 정보표시 설비공사와 관련된 입찰담합 사건(2005년 4월 7일 국토교통성 관동지방 정비국, 동중부 지방 정비국, 동킨키 지방 정비국 및 동츄고쿠 지방 정비국이 발주한 같은 공사와 관련된 입찰담합 사건과 함께 6사에 대해 권고, 같은 달 27일 권고심결)

- 오키나와현이 발주한 토목공사와 관련된 입찰담합 사건(2006년 3월 29일 건축공사와 관련된 입찰담합 사건과 함께 152명에 대해 배제 조치 명령)
 - ※ 개정 독점 금지법에 근거해 사전 절차를 거치고, 배제 조치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동시에 한 사건.
- 알루미늄박의 제조 판매업자등 7사에 의한 동제품의 수요자 인도 가격 카르텔 사건(2005년 11월 11일 7사에 대해 권고, 같은 해 12월 12일 권고심결)
- 주택용 유리 섬유의 제조 판매업자 3사에 의한 동제품의 도매업자를 위한 판매 가격 카르텔 사건(2005년 10월 20일 3사에 대해 권고, 동년 11월 18일 권고심결)
- (2) 중소 사업자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신속한 대응
 - 금리스왑의 판매와 관련된 대기업 도시은행에 의한 융자 거래처 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 사건(2005년 12월 2일 권고, 같은 달 26일 권고심결)
 - 대규모 소매사업자에 의한 납입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 사건(2005년 4월 15일 권고, 동년 5월 12일 권고심결)
 - (3) 공공조달분야에 있어서의 덤펑 수주 문제에 대한 대응
 - 재무성이 발주한 근대 금화의 매각 업무와 관련된 인터넷 옵션 운영 보조 업무 등의 입찰에 있어서의 덤펑 수주 사건(2005년 12월 9일 2사에 대해 경고)
- (4) IT·공익사업 분야, 지적 재산권 분야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전화 영업과 관련되는 차별적 취급 사건(2005년 4월 21일 경고)
 - 리스트팅 광고에 있어서의 배타적 계약에 대한 심사 사건(2005년 10월 21일 심사 중단·공표)
- (5) 경쟁자 배제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
 - 후쿠야마시 의사회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 등의 제한 사건(2005년 12월 27일 경고)
 - 미야기현 사립학교 연합회에 의한 가맹교의 사업활동 제한 사건(2005년 12월 15일 경고)

3. 심판 및 심판 심리판결

- 19건의 심판 개시 결정을 하는 한편, 심판 절차를 거친 심리판결로서 24건의 심리판결
- 2005년도 중의 심판계속사건은 144건(중 115건은 과징금 납부 명령과 관련된 것)이며, 최근 몇 년간 높은 수준 유지
- ※ 경품표시법 위반 심판 사건은 제외

2006. 5. 31. 공정취인위원회